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2. 26.)

상정/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27.)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없고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처분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위원)

원안의결함.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육기관 지정일부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u>교육기관 지정일부터</u> 1년 이 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생 략)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1. · 2. (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u> <u>지정일부터</u> ----- ④ (현행과 같음)